**A는 의류를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 중인 자이다.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물음에 대하여 각각 답하시오.

(물음1) A가 의류에 임의로 붉은 색의 십자가 문양을 만들어 넣은 경우 응용미술저작권의 침해인가 ?**

**(답변1) 십자가 문양은 교회 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응용미술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**

 **(물음2) A가 임의로 피구왕 통키의 모습을 의류에 삽입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는가?**

**(답변2) 피구왕 통키 캐릭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의류에 해당 캐릭터를 삽입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.**

 **(물음3) A가 임의로 만화영화의 캐릭터를 의류에 삽입하였는데 그 캐릭터는 위 만화영화의 주인공도 아니었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없었다. 이러한 경우에도 A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하시오.**

**(답변3) A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. 캐릭터의 저작물성은 인기나 대중적 인지도와 관계없으며 그 해당여부가 저작권법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.**

 **(물음4) A가 의류에 유명연예인의 사진을 삽입한 경우 어떠한 권리의 침해가 되는가 ?**

**(답변 4) 실재하는 인물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 캐릭터의 저작물성이 침해된다.**

 **(물음5) (물음4)의 권리 침해의 성립요건 2가지를 설명하시오.**

**(답변 5) 1.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 또는 인접물의 사용하는 것은 권리침해이다.**

**2. 기본의 저작물을 베끼거나 창작성이 없는 경우 복제권 침해가 된다.**